

## 자체+위탁훈련 지원금 지급기준 변경관련 안내

### □ 개정 취지

- 위탁훈련임에도 기관인증 회피와 실시신고 편의를 위하여 자체+위탁으로 과정인정 받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
- 변경 사항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자체+위탁훈련 과정에서 자체근로자 참여인원과 관계없이 지원	실시인원 대비 자체근로자 수료인원이 10% 이상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 지원	10% 미만인 과정의 경우에는 훈련비 전액 미지원 (^19.10.1.실시과정 부터)

### □ 변경 내용

- 적용 대상 : '19.10.01 이후 개시(훈련시작일 기준)되는 자체+위탁훈련
- 적용 내용

- 자체+위탁훈련은 자체훈련\* 수료인원이 실시인원\*\*의 10% 이상인 경우에만 훈련비를 지원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

\* 훈련기관의 비용으로 자사근로자 + 타사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

\*\* 전체 훈련 참여인원 중 지원외인원은 제외하고 산출한 인원

#### ◆ 실시신고

- 훈련실시인원 중 자체훈련 실시인원 10%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시신고가 가능하며, 10%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회차 실시신고 자체가 불가

#### ◆ 수료보고

- 위 해당 회차에 대해 자체수료인원이 실시인원에 10%에 미만일 경우 수료보고는 가능하나 비용신청은 불가

- 자체훈련 수료인원이 실시인원의 10% 미만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위탁과정으로 과정인정을 새롭게 받아야 함
- ※ 종전에 자체+위탁으로 승인을 받은 과정 중 실시한 이력이 없는 과정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위탁과정으로 일괄 변경 예정
-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면서 훈련기관과 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①『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1항 제3호의 계열관계에 있거나 ②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기관인증이 없어도 기업맞춤형으로 위탁훈련으로 실시 가능

◆ 기업맞춤형 훈련

-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매뉴얼 제65페이지의 과정개설요청 확인서와 훈련기관과 참여 기업 간의 계열관계(또는 출자관계)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

**한국산업인력공단**  
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